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 2008.12.18 부령제 00047 호 ]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規則は、「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および同法施行令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CD~~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다.

第 2 条(専門人材養成機関指定申請) ① 「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施行令」(この項で「令」という。)第 5 条第 2 項による消防産業専門人材養成機関(以下「養成機関」という。)指定申込書は、別紙第 1 号書式に従う。

@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養成機関指定申請を受け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だけ該当する。)と事業者登録証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該当書類(事業者登録証の場合にはその写本)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소방방재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 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 3 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養成機関指定申請を受けた時には、特別な理由がなければ 20 日以内に審査して、その結果を申請人に書面で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養成機関で指定する時には、別紙第 2 号書式による養成機関指定書を発行して、別紙第 3 号書式による養成機関指定台帳に必要な事項を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기술료의 감면)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 7 조제 2 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第 3 条(技術料の減免) 消防防災庁長は、令第 7 条第 2 項後段により技術開発事業者が技術料を一度に出したり、分割納付期限より早く出す時には、次の各号により技術料を減免することができる。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1 技術料の1回目納付予定日(協約により技術料を出すことにした日をいう。以下この条で同じ。)から1年以内に技術料全額を一度に出す場合:技術料全額の100分の30減免

2. 기술료의 1 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 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 년을 초과하여 2 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2 技術料の1回目納付予定日に該当技術料を出して1回目納付予定日から1年を超過して2年以内に残った技術料を一度に出す場合:残った技術料の100分の20減免

제4 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CD 영 제8 조제2 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 호서식에 따른다.  
第4条(標準化事業推進専門機關指定申請) ① 令第8条第2項による標準化事業推進専門機關(以下“専門機關”という。)指定申込書は、別紙第4号書式に従う。

@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専門機關指定申請を受け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21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登記簿謄本(法人である場合だけ該当する)と事業者登録証(証)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申請人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該当書類(事業者登録証の場合にはその写本)を添付するよ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 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 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専門機關指定申請を受けた時には、特別な理由がなければ20日以内に審査してその結果を申請人に書面で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専門機關として指定する時には、別紙第5号書式により専門機關指定書を発行して、別紙第6号書式により専門機關指定台帳に必要な事項を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 조(소방사업자의 신고) 꽃 영 제20 조제2 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른다.

第5条(消防士業者の宣告) ① 第20条第2項による消防士業者の宣告書は、別紙第7号書式に従う。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 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 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消防士業者申告を受けた時には、別紙第8号書式による申告確認書を発行して、別紙第9号書式による宣告台帳に必要な事項を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5;1 영 제1120 조제1 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令第 20 条第 1 項により消防士業の細部分野とその分野別申告に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

제 6 조(출자증권) 1)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 36 조제 2 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第 6 条(出資証券) ① 消防産業共済組合(以下“共済組合”という。)は、令第 36 条第 2 項により出資者が出資金を納入した時には、直ちに出資証券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 제 1 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② 第 1 項の出資証券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記録して、代表者が署名捺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出資を証明する文書に対してもまた同じ。

1. 공제조합의 명칭

1 共済組合の名称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2 共済組合の設立年月日

3. 총출자금

3 総出資金

4. 출자 1 좌의 금액

4 出資 1 チュアの金額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5 出資者の姓名(法人である場合にはその名称および代表者の姓名)、屋号および住所

6. 출자 연월일

6 出資年月日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出資証券譲渡の制限に関する事項

부칙 <제 47 호 (2008.12.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소방방재청과 1 소속기관 직제 1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6 항제 11 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간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일부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 조제 1 항제 3 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  
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5/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

공사(이하 “공사”라한다)”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전단/ 제16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3

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 제1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목/ 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

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114조 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표 6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 등란의 제12호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18의 제목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22 나목의 금액란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별지 제11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

원”으로 한다.

핏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 1항제 2호 및 제 17조제 2항 중 “ 「소방기본법 제 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으로 하고/ 제 19조제 2항 중 “ 「소방기본법」 제 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 10호 중 “ 「소방기본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 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16조/ 제 18조제 1항 본문 및 같은 조제 2항/ 제 19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51조제 2항 본문, 제 65조제 1항제 3호, 제 7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 78조제 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 9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2조제 5항/ 제 13조제 2항/ 제 14조제 2항/ 제 15조제 2항/ 제 18조제 5항, 제 19조제 2항/ 제 51조제 3항/ 제 71조제 4항 및 제 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 19조제 1항제 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 20조제 4호나목 및 다음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 51조제 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원장”으로 하고/ 제 60조제 1항제 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 71조제 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 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 2호나목/ 같은 별표 제 4호 및 제 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 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 1호서식 비고란의 제 7호가목 중 “ 「소방기본법」 제 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 9호 중 “소방기본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 16호서식 비고란의 제 8호가목 중 “ 「소방기본법」 제 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 1110호 중 “소방기본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 ”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 17호의 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 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 20 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 22 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 30 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 40 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 41 호서식 뒤쪽의 처리 기관란/ 별지 제 44 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컴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 21 호서식/ 별지제 24 호서식/ 별지 제 31 호서식 및 별지 제 46 호서식 중 “한국소 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